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,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219호, 2023. 1. 17. 공포, 2023. 7. 18. 시행)됨에 따라,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(제55조의2제2항 및 제4항)

-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

2)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채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되,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
나.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(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)

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

다.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(별표3의2)

생계지원금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학습보조비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의2(학습보조비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학습보조비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
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학습보조비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학습보조비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
2. 기간: 환수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

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

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56조 중 “법 제92조제3항”을 “법 제9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에 제7호의2, 제19호의2,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

19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

21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

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
21의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
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이자
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제55조의2(학습보조비등의 환수)</u>		<u>제55조의2(학습보조비등의 환수)</u>		
<u>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등(이하 “학습보조비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(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학습보조비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</u>		<u>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학습보조비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</u>		
<u>1.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</u>				
<u>2.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</u>				
<u>3.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</u>				
<u>4.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</u>		<u>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대상 학습보조비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학습보조비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</u>		
<u>5.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</u>		<u>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</u>		
<u>6. 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</u>				
<u>7.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</u>				
<u>8.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</u>				

9.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
금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
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
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
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
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
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
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
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
야 하며,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
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
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
에게 보내야 한다.

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학습보조비등을 받
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
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
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
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
에 환수학습보조비등을 반환
하는 경우에는 환수학습보조
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
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
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
개월 수로 한다.

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
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
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
산정한다.

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
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
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
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
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
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
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
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
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

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해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

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
으로 하되, 법 제92조제1항제3
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
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
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
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
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
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
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
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
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
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
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
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
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
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
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
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92
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
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56조(결손처분) 국가보훈처장은
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

제56조(결손처분) -----
법 제92조제4항-----

의 결손처분(缺損處分)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